



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국회 법안 제출 현황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최근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수사권 이관 및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안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이러한 급진적 국정원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갑작스레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많은 국정원 관련 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 폐기되는 과정을 거듭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제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국정원 관련 법안은 약 80건 발의되었고, 이 중 40여건이 국정원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으로 조사되었다(【표 1, 2, 3】 참고). 국회에서 발의된 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제17대 및 18대 국회 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법안

국회에서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제17대 국회인 2005년 12월이다. 당시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법은 국정원이 국회의 심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국가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국회 정보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수사권 폐지의 일부개정안 차원이 아닌 국정원 업무의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된다. 2006년 4월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회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해 국내 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직무범위 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

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정원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동법은 국정원의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등의 수사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사권을 폐지하고, 미국 CIA 등과 같이 수사권 없이 정보수집 및 배포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다. 정치 개입 관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이를 지시할 경우 직원은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이 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까지 갔다.

【그림 1】 수사권 관련 외국정보기관 운영사례

국 가	기 관 명	수사권 범위
미국	연방수사국(FBI)	내란,간첩,테업,테러,군대방해 등
콜롬비아	보안성(DAS)	납치,테러,마약 등 중요범죄에 관한 사항
베네수엘라	정보총국(DISIP)	국가안보관련사항
프랑스	국토감시국(DST)	간첩 등 반국가사범
영국	보안정보부(SS)	수사권은 없으나, 국가안보 범죄조사권 보유
오스트리아	헌법보안국(BVT)	방첩,대테러,조직범죄 등 사항
중국	국가안전부(MSS)	정부 및 사회주의제도 전복, 간첩,국가기밀절취,정탐,매수·제공, 국가분열, 기타 국가안전침해와 관련된 사항
일본	공안조사청	수사권은 없으나 내란 및 외환, 사회혼란, 소요에 관한 조사권 보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형법상 간첩 등 반국가사범
인도	내무성정보국(IB)	테러,마약,국제범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방글라데시	국가정보부(NSI)	테러,마약,국제범죄, 방첩 및 국내정치범죄
호주	보안정보부(ASIO)	국가안보 관련 장소·인물·컴퓨터에 대한 수색 및 감청, 테러관련인물에 대한 억류 및 신문권한 보유
싱가포르	국내보안청(ISD)	방첩, 국가전복, 대테러, 인종, 종교적 극단주의
베트남	공안부(MPS)	방첩, 국내외 정보수집, 입국관리 등

국 가	기 관 명	수사권 범위
미얀마	군정보부(OCMI)	국가안보, 테러, 마약 등
태국	국가정보부(NIA)	총리지시로 특정사안에 대한 수사
러시아	연방보안부(FSB)	간첩,테러,조직범죄,부패,불법무기,마약, 밀수 등 -러시아 헌정체제붕괴 기도자나 단체에 대한 공작수사 활동 등 권한 보유
우크라이나	안전부(SBU)	방첩, 국제범죄 등 -기타 조직범죄, 마약, 밀수, 위폐범 등에 대해서는 검·경과 공동으로 수사권 보유
카자흐스탄	보안위원회(CNS)	테러,부패, 밀수, 불법이민 등 안보관련 범죄
키르기스스탄	국가보안부(NSS)	국내보안, 방첩 등
우즈베키스탄	국가보안부(SNS)	국내보안,방첩,간첩,국제범죄 혐의 외국인 등
몽골	정보총국(GIA)	반역,국가전복기도,무장폭동,무기,폭발물 불법거래,국가기밀누설,대량살상무기반입 등
터키	국가정보부(MIT)	방첩 등
이집트	정보부(GIS)	체제전복 사범 등
요르단	정보부(GID)	테러,마약,돈세탁,반체제 및 간첩 등
남아공	국가정보부(NIA)	국가전복,테러,과업,공적부패,무기밀거래 등
UAE	연방정보부(SSD)	내란,외환,간첩,테러,폭동 등
나이지리아	국가보안청(SSS)	국제범죄, 반정부사범 등
이란	이란정보부(MOI)	간첩, 마약,국가전복죄 등
쿠웨이트	보안총국(KSGD) 보안청(KSS)	반왕정,반국가 사범 및 테러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사우디	정보부(GIP)	국가안보와 왕정체제 유지관련 사항
리비아	보안총국(ISFS)	사회주의 국가체제 유지관련 사항
노르웨이	보안경찰청(PST)	방첩,테러,비확산,국내정보활동 관련사항 등
스웨덴	보안경찰청(SAPO)	간첩,테러,국제범죄 등
덴마크	보안정보국(PET)	간첩,테러,이적행위,국가기밀누설,극단주의 범죄 등
폴란드	국가보안부(ABW)	테러,국가기밀누설,국가보안,국가경제위협, 무기 및 폭발물제조·소지

※ 출처: 국가정보원

당시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이 보안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지가 어렵고 남북대치 상태 및 통일 이후의 대비를 위해서 대북정보 수집 및 탈북자 신문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또한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등 인권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한 바 있고, 국정원법 제19조에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최근 들어 국정원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사태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더구나 '해외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여부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상황에 따라 달리고 있는 바(당시 분석대상 59개국 중 34개국 정보기관이 수사권 보유함. <그림 1>참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피력했다. 18대 국회 당시나 현재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정보위원회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박영선 의원안도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표 1】 제17, 18대 국회 '국가정보원' 권한 축소 관련 주요 법률안

제안대수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처리일	처리상태	주요 내용
제17대 (9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임종인	06.07.28	08.05.29	임기만료 폐기	1. 수사권 폐지 2. 국가기밀을 이유로 자료제공 거부 때도, 국회정보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내용 보고 등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노회찬	06.04.17	08.05.29	임기만료 폐기	1.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한정 2. 수사권 폐지 3. '해외정보처'로 명칭변경 4. 예결산 감독 강화 등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양승조	05.12.13	08.05.29	임기만료 폐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할 때에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는 규정) 삭제 등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임종인	05.12.01	08.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정보원 수행 직무 중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안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등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안영근	05.08.18	08.05.29	임기만료 폐기	국정원을 예산회계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제12조) 등
	국가정보원직원법	김정훈	05.08.17	08.05.29	임기만료 폐기	제17조의 비밀의 엄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제안대수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	처리일	처리상태	주요 내용
	일부개정					의 규정에 따른 정치관여의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또는 도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24조 및 제32조의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김정훈	05.08.17	08.05.29	임기만료 폐기	1. 국가정보원법에 도청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금지하는 한편 이에 위반하는 자는 가중처벌 2.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등
	국가안전기획부및국가정보원의불법도·감청자료의공개에관한특별법안	천영세	05.08.09	08.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도·감청 사료 내용 공개 등
	국가안전기획부(현국가정보원)불법도청테이프등의처리에관한특별법안	이은영	05.08.09	08.05.29	임기만료 폐기	독립 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도청테이프 내용의 공개여부 등 결정 등
제18대 (1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박영선	09.02.24	12.05.29	임기만료 폐기	1. 수사권 폐지 2. 국회 요구 시 감사원 감사 실시 3. 예결산 감독 강화 등

제19대 국회

제19대 국회에서는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발의되었다. 진성준 의원, 오병윤 의원, 박원석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 국정원법을 전부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해외정보수집과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시키고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학술정보원(통해원)’ 또는 ‘해외정보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전부개정안법률안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처럼 분리·이관하고 정보수집활동만 할 것, 국회정보위의 요구가 있을 시 국가정보원의 시설, 장비, 문서 등을 공개할 것,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것,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국회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19대 국회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외에도 수사권 폐지, 국정원 직원 채용요건 완화, 독립위원회에서 불법도청자료 공개여부, 국정원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자 보호, 그리고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었지만 전부개정안과 함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표 2】 참고).

【표 2】 제19대 국회 ‘국가정보원’ 권한 축소 관련 주요 법률안

제안대수	법안명	대표 발의	제안일	처리일	처리상태	주요 내용
제19대 (16건)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신경민	15.12.22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 마련 등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김광진	14.09.23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정원 직원 임용 자격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삭제 등
	국가정보원 법 일부개정	문병호	14.02.10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정보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 추가 등
	국가정보원 법 전부개정	진선미	13.10.08	16.05.29	임기만료 폐기	1.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 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 2. 기관의 명칭 ‘통일해외정보원’ 으로 변경 등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진선미	13.10.08	16.05.29	임기만료 폐기	1.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 가능 2.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 삭제 등
	국가정보원 법 일부개정	정청래	13.10.04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박영선	13.09.05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원장의 허가 없이도 증언 가능 등
	국가정보원 법 전부개정	박원석	13.09.05	16.05.29	임기만료 폐기	1. 직무범위 제한 2. ‘해외정보원’ 으로 명칭 변경 3. 예결산 감독 강화 등
	국가정보원	박영선	13.09.02	16.05.29	임기만료	1. 국가보안법 규정외에 수사권

제안대수	법안명	대표 발의	제안일	처리일	처리상태	주요 내용
	법 일부개정				폐기	폐지 2.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동향파악, 정보수집, 언론형성 등 목적으로 근무 및 상주, 출입 금지 3. 정치관여죄의 경우 형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 4. 예산 상세하게 청구(총액청구 금지) 5. 국정원 직원은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그 상관과 같은 형벌에 처함 등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민병두	13.08.13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등과 관련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엄수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 등
	국가정보원 법 전부개정	오병운	13.08.07	16.05.29	임기만료 폐기	1. '해외정보원' 으로 전환 2. 대북 업무는 '통일정보원' 신설 3. 수사권 분리 4. 국회통제 강화 등
	국가정보원 법 일부개정	이원욱	13.07.24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개입 등 공익신고 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되,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함 등
	국가정보원 법 전부개정	진성준	13.06.27	16.05.29	임기만료 폐기	1. 직무범위 축소 2. 기관 명칭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등
	국가정보원 법 일부개정	정청래	13.06.19	16.05.29	임기만료 폐기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 등
	국가정보원 법 일부개정	민병두	13.03.21	16.05.29	임기만료 폐기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행위 처벌형량 강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
	국가안전기 획부(현국가 정보원)불법 도청테이프 등의처리에 관한	심상정	13.03.05	16.05.29	임기만료 폐기	독립적 위원회에서 불법도청자료 공개여부 결정 등

제20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대표적인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은 천정배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 국정원 직원 채용요건 완화, 국정원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일부개정안도 다수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표 3】참고).

국회에서의 국정원 권한 축소에 관한 법안이 제출될 당시 심지어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이러한 법들은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황당법안’ 또는 ‘특이법안’으로 간주될 정도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정원 직무를 대폭 축소시키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던 법안들은 하루아침에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법안으로 변화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구 야권에서 발의된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자체 개정안을 국회정보위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안을 뒷받침하는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제출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제18대 국회 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3】 제20대 국회 ‘국가정보원’ 권한 축소 관련 주요 법률안

제안대수	법안명	대표 발의	제안일	처리일	처리상태	주요 내용
제20대 (10건)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이태규	17.11.24		계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감독, 통제 강화 등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김성태	17.11.22		계류	국정원 예산서 상세히 첨부(총액 청구 금지) 등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이원욱	17.09.05		계류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개입 등 공익신고 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되,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 등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천정배	17.07.05		계류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등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천정배	17.07.05		계류	1. 국정원 업무범위 축소 2.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등

제안대수	법안명	대표 발의	제안일	처리일	처리상태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진선미	17.06.27		계류	1. 국가정보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 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 가능 2.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하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 삭제 등
	국가정보원 법 전부개정	진선미	17.06.27		계류	1. 국정원 업무범위 축소 2.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등
	국가정보원 법 일부개정	김수민	16.12.29		계류	국정원 예산 중 국가의 안전보장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 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 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 등
	국가정보원 법 일부개정	박찬대	16.12.29		계류	국정원장 국회 임명 동의권 등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	김혜영	16.12.06		계류	국정원 직원 임용 자격에 ‘사상 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 체가 건강한 사람’ 규정 삭제 등